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116호

나. 발의자 : 강석주 의원 외 6명(찬성자 46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08월 14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0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음.
- 그러나 민간위탁사무를 특정 법인 및 단체 등이 과점적으로 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규모가 비대해지고 실제로 수탁기관의 자본금(출자금)에 비해 과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위험이 행정서비스에 전가될 우려가 있음.
- 이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자격제한 등을 규정하여 적정한 규모를

통해 안정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관리를 도모하여

- 다양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높여 민간위탁사무에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“재위탁”의 정의를 정비함(안 제2조).
- 나. 제3자 재위탁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운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.
- 라.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규모의 기준을 규정함 (안 제7조).
- 마.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.
- 바. 재계약의 횟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재위탁 개념을 명료화하고 제3자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,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.

나. 민간위탁 사업 배경 및 현황

-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영역에 있어서 경직된 고용구조를 가진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,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.
-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서울시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77개의 사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7,270억원에 달하고 있음.

< 서울시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>

(단위 : 건, 억원 / 2023. 8.16. 기준)

계		예산 지원형						자립형	
		소 계		시 설		사 무			
건수	예산	건수	예산	건수	예산	건수	예산	건수	예산
377	7,270	360	7,240	277	6,379	83	861	17	30

※ 자립형 예산은 시설물 유지보수,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

다. 개정안의 세부 내용

(1) 재위탁의 정의 정비(안 제2조제4호)

- 안 제2조제4호는 재위탁을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.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(생 략) 1. ~ 3. (생 략) 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5. · 6. (생 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재위탁”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 5. · 6. (현행과 같음)

- 이는 현행 규정이 재위탁을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‘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’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수탁기관이 배제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.
- 그러나 재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기존의 수탁기관이 재선정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.

(2) 재계약에 대한 통제 강화(안 제4조의3제2항, 제12조제3항 신설)

- 안 제4조의3제2항 및 안 제12조제3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전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 하되, 재계약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한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생 략)</p> <p>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. <단서 삭제></p>
<p>제12조(재계약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2조(재계약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</p>

- 현행 조례 제11조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,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’ (이하 “지침”)에 따라 재계약의 경우 시설형¹⁾ 및 자립형²⁾은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한 반면, 사무형³⁾은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을

1) 행정재산(서울시 소유시설,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)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.
예) 청소년 수련관, 각종 복지시설, 자원화수시설 등

2)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, 수익이 발생 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.
예) 병원, 야구장, 유스호스텔 등

3)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

할 수 없도록만 제한하고 있음.

< 민간위탁 유형별 재계약 제한사항 >

구 분	시설형 및 자립형	사무형
위탁 기간	3년 이내(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) ※ 다른 법령·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	
재계약 추진 근거	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8호사목	
재계약 제한	재계약 1회에 한해 가능 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)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	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할 수 없으며, 차기 위탁 시 공개 모집으로 전환 ※재위탁(공모)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, 재위탁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이 선정함

※ 출처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. 25

- 이와 같이 동 지침상 시설형 및 자립형은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됨에 따라 최장 6년의 범위에서만 위탁업무가 가능하나, 사무형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최장 10년까지 동일 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.
-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수탁기관의 장기 독점으로 인한 독과점 발생,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.
- 따라서 동 개정안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특정 수탁

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. 예) 산학연 협력지원, 에이즈 예방 홍보 등

기관이 장기간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하고, 경쟁을 통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.

(3) 제3자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(안 제4조의3제4항)

- 안 제4조의3제4항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시의회 사전 보고에서 사전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동의를 받아야 ---.

- 현행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한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자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음.
- 또한 이와 연동하여 제3자 재위탁은 상기의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, 동 개정안은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3자 재위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판단됨.

(4) 독점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탁사무 수행 방지(안 제5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
- 안 제5조는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8조제1항4)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에 포함되는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추가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<u>제8조제3항</u>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</p> <p>4. ~ 6. (생 략)</p>	<p>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8조제1항 및 제3항</u>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-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만 동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공모시에도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심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이를 통해 수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) 제8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- 또한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의 검토사항에 ▶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무 수행현황, ▶ 최근 3년 이내 민간위탁 수행사무의 지도 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 결과보고서를 추가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시장은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시장은 수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</u></p> <p>7. <u>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</u></p>

- 이와 함께 시장에게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,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② <신 설></p>	<p>제7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.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

- 이는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다른 서울시 위탁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경영 방만화와 독점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.
- 한편 안 제8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자격 제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제8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8조(수탁기관 선정) ① ----- ----- -----. <u>민간위탁의 목적, 성질,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u>

- 이는 상위법인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개별 사무의 법적근거에 따라서는 대상기관의 자격 제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, 상위법과 같이 “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” 만 수탁기관의 자격을

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개정안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(6)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불가
(안 제5조제4항, 안 제9조제1항)

- 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9조제1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,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연임</u> 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 ④ ----- ----- 한 차례 만 연임----- -----. -----.
제9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단서 신설>	제9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다만,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이는 운영평가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, 특히 운영평가위원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탁기관

선정까지 관여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음.

라. 종합의견

- 동 개정안은 재계약 횟수 제한, 제3자 위탁 시 시의회 동의, 수탁기관 자격제한 등 민간위탁사무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,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다만 동 조례 제4조의3제1항은 “서울특별시의회”에 대한 약칭으로 “의회”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.

< 수정의견 >

개정안	수정의견
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 ①·② (생략)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공무원, <u>서울특별시의회</u> 에서 추천하는 시의원,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 수 이상으로 구성한다.	제5조(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 ①·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의회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개정안과 같음)

개정안	수정의견
제9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(생 략)	제9조(적격자 심의위원회) ① (개정안과 같음)
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의회</u>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. ~ 6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<u>의회</u>----- 2. ~ 6. (개정안과 같음) ③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

- 또한 안 제8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, 무분별한 자격제한으로 인한 법적 논란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“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”만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
< 수정의견 >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용우	02-2180-8062

【참고자료】

< 수탁기관의 의무(민간위탁 관리지침 P. 101~102) >

◦ 공정, 타당한 사무 처리 기준

- 위탁사무의 지역처리·불필요한 서류의 요구·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불가
- 위탁받은 목적 외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 사유 불가

◦ 협약사항 등의 준수

- 관계법령·조례 및 위탁협약사항 준수하여야 함
- 시장의 명령·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
- 위탁시설 증·개축 또는 추가 시설 신축 시 시장의 사전승인 필요
- 시장은 수탁기관이 증·개축 또는 신축한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에 기부하게 할 수 있음.

◦ 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 제출

- 수탁기관을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
◦ 제3자 재위탁 금지

-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(제3자 재위탁)할 수 없음
- 다만,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

◦ 사무편람 비치

- 수탁사무 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치
- 사무편란의 내용은 수탁사무의 처리부서, 처리기간, 처리과정, 처리기준, 구비서류,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

◦ 수탁사무 노동자의 고용·노동 조건 개선 노력

◦ 수탁기관의 교육 준수 의무

-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기관장, 인사·노무 당당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채용기준을 포함한 인사·노무 분야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(필수)하여야 함
- 수탁기관은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, 인권, 청렴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(필수)하여야 하며,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는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

※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청렴·인권·성희롱 예방, 인사·노무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

◦ 기타

- 중장기 사업 성과목표를 협약 체결 수 3개월 내 확정하고 시에 제출
- 사업계획서는 매년 수립하여 제출
- 종합성과평가 및 통합회계감사 협조
- 업무추진비 공개(수탁기관 및 위탁 주관부서)
- 수탁사무 운영을 위한 물품 등 구매 시 재래시장·소형마트 등 이용